2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설치년도	2005년	운용개시년도	2005년
주 무 부 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금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방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2. 평가 요약표

평 가 결 과	존 치
개 선 사 항	 재원 구조의 적정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자체 수입을 대폭 상향시키고 중기가용자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권고됨.

3. 존치평가 총평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 재보험사업에 거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사업 재원은 정부 출연금, 재보험료 수입, 기타 이자수입이 포함되고, 기금의 용도로는 재보험료 납입 및 재보험금 지급,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비 등이다.
- □ 본 기금은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 주체의 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최종적인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 본 기금은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과 중기가용자산 적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재원구조의 적정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자체 수입을 대폭 상향시켜 주요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을 높이고, 기금의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기가용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 본 기금은 기금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 기금(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재원구조의 적정 수준 미흡 문제가 일부 제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존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 본 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지급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인정된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지만 2002년, 2003년 연이어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거대재해가 발생함으로써 재해보험 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례를 보아 본 기금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①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의 사업인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설치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여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됨.
 -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기금의 설치)」에 근거 하여 설치되었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 재보험사업에 거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을 가짐.

② 사업 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의 사업인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기금 사업의 공공성이 높지만 사업 규모의 일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낮아 민간사업이나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③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의 사업인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타 기금 및 예산과 중복되는사업이 없음.
 - 본 기금과 비교된 기금으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 기금 등임.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①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표1> 주요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

(단위: 억원, %)

자체수입	지출(B)			비중	평가결과
(A)	기금운영비	사업비	차입금이자상환	(A/B)	청가결과
167	7	2,925	0	5.7%	부적정

※ 2013년 기금존치보고서 제출자료 참고

<표2> 2012년 조성액 대비 차입금 및 정부출연금 비중

(단위: 억원, %)

차입금	정부출연금	조성액	비중	평가결과
(A)	(B)	(C)	(A+B)/C	
0	1,205	3,017	39.9%	적정

- ※ 2013년 기금존치보고서 제출자료 참고
 - 본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해 주요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을 분석 결과, 비중이 5.7%로 2012년 자체수입이 지출(기금운영비+사업비 +차입금이자상환)의 2/3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미흡하여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됨.
 - 본 기금 사업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기금의 상당 부분이 농특특별회계전입금으로 조성되는 특수성은 인정됨.
 - 그러나, 기금의 효율적인 유지와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자체 수입을 대폭 상향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한편, 2012년 조성액 대비 차입금 및 정부출연금 비중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비중이 39.9%로 2012년 수입에서 정부출연금과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정됨.

②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표3>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표

(단위: 억원)

'12 년말	중기	평가	근거
순자산 ¹	가용자산 ²	결과	
81	81	과소	기금의 특성상 재해발생년도로 인해 실적자료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적정중기가용자산규모의 범위가 과대해짐.

- 1 '12년말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채를 제외
- 2」 순자산에서 5년 이내 유동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산출
 -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 기금의 특성상 재해발생년도로 인해 실적자료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정중기가용자산규모의 범위가 과대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기금의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기가용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나아가 기금 자체 수입 비중을 높여서 중기가용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근거		
	본 기금은 재원 구조의 적정성이 미흡 문제 해결 등이		
존치	지적되고 있으나, 정부정책상 별도의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음.		

① 기금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되어왔기에 기금 목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은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의한 손실을 많은 받는 산업이고 시장의 실패가 있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진국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기금 목적의 유효성이 인정됨.

②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 본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인데,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과 비교된 기금으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 기금 등임.
-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지만 2002년, 2003년 연이어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거대재해가 발생함으로써 재해보험 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례를 보아 기금의 특수성이 인정됨.

③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ㅇ 해당사항 없음.